

제429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정기회)

제 11 호

(임시회의록)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1월17일(월)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나. 국가유산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나. 국가유산청 소관
3.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최형두 의원·박수현 의원·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068)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5)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9)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9)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31)
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7)
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1)
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6)
1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1)
1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0)
13.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95)
1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1)
15.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2)
16.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6)
1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2)
1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91)
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9)
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3)

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9)
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9)
2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8)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2)
25.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9)
2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5)
2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5)
2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3)
2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5)
30.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7)
3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0)
3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7)
33.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4)
3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322)
3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0)
3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10)
3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7)
3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26)
3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2)
4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2)
4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7)
4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7)
4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67)
4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2)
4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6)
4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92)
4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3)
4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0)
4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1)
5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2)
51.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9)
5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7)

-
5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66)
54.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6)
5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5)
5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1)
5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36)
5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95)
59.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3)
-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6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6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3.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최형두 의원·박수현 의원·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068)	16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5)	16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9)	16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9)	16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31)	16
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7)	16
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1)	16
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6)	16
1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1)	16
1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0)	16
13.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95)	16
1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1)	16
15.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2)	16

16.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6)	16
1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2)	16
1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91)	16
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9)	16
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3)	16
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9)	16
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9)	16
2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8)	16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2)	16
25.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9)	16
2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5)	17
2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5)	17
2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3)	17
2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5)	17
30.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7)	17
3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0)	17
3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7)	17
33.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4)	17
3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322)	17
3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0)	17
3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10)	17
3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7)	17
3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26)	17
3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2)	17
4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2)	17
4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7)	17
4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7)	17

4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67)	17
4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2)	17
4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6)	17
4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92)	17
4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3)	17
4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0)	17
4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1)	17
5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2)	17
51.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9)	17
5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7)	17
5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66)	17
54.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6)	17
5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5)	17
5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1)	17
5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36)	17
5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95)	18
59.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3)	18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교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울러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녹화중계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하여 최휘영 문화체육부장관과 김현준 국제문화정책관은 아랍에미리트 순방 등 참여를 사유로 불참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14시03분)

○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박수현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소위 위원님들께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수현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박수현 위원장입니다.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471억 원을 감액하고 582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총지출 기준 27억 원을 감액하고 389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3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는 교육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지역에서도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강사료 등 314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K-콘텐츠 펀드 출자는 미투자금 여력 등을 고려하여 모태펀드 문화계정에서 50억 원을 감액하고 문화산업 전 분야에 대한 전략적·집중적 투자 확대를 위해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에 3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육성은 OTT 특화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OTT 글로벌 유통 활성화하며 빛마루방송지원센터 건물 노후화에 따른 관리설비 보수공사 등을 위해 147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방송통신발전기금에 편성한 아리랑TV 및 국악방송 콘텐츠 제작비가 삭감되어 문체부 예산에 157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국립도서관의 AI 기반 서지정보 구축, AI 텍스트 구축, 언어모델 및 AI 서비스 개발을 위해 8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섯째, 광역권 관광개발은 권역별 사업들의 연례적인 집행 부진 등을 감안하여 13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곱째,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은 지역 관광권 홍보·마케팅 및 지방공항 입국 경로 확대 프로모션 등을 위해 4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덟째,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은 학생에 대한 스포츠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1 학생 1 스포츠 보급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여 4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홉째,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감액분에 대한 원상복구 및 처우 개선을 위해 37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유산청 소관입니다.

국가유산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21억 원을 감액하고 136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운용지출계획안은 15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유산 보수정비는 국가유산의 원형 보존 및 멸실·훼손 방지를 위한 보수정비 수요 증가에 따라 135억 10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디지털 행정지원은 국가유산의 생성형 AI 데이터 개방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99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유산 교육활동 진흥은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따른 안내판 정비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11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님.

○양문석 위원 심사소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유감 표명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서, 유감 표명이라고 생각하고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언론재단이 빅카인즈 AI 사업을 지난 과정에 있어서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빅카인즈 AI 사업에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선거가 언제였느냐 하면 8월 15일이라고 지금 답을 해요. 대통령 선거는 참고로 6월 3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언제냐라고 하니까 27년까지라고 이야기해요. 참고로 30년입니다.

여전히 빅카인즈 AI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답변 오류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양문석 의원실에서 계속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250억을 들여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매년 평균 6억 원 이상의 시스템 고도화를 해 왔는데

대통령선거를 언제 했는지, 현재 대통령이 누구인지, 현재 대통령의 임기가 언제인지까지도 대답하지 못하는 이러한 빅카인즈 AI를 왜 고도화시켜야 되는지…… 도대체 언론재단 집행부는 뭘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이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해 왔었고요.

심지어 가짜 데이터를 또 발표를 합니다. 빅데이터 뉴스 분석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느냐 하면, 전형적인 자화자찬인데 빅카인즈 AI 평균 94점, 챗GPT 88점, 제미나이 69점 이런 식으로 최고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조회수 연간 140만 회, 웬만한 문체위에 잘 나오는 조회수도 100만이 나옵니다, 1개짜리가. 그런데 140만 연간 방문자를 위해서 돈을 갖다가 이렇게 몇백 억을 투입해 가지고 겨우 답변이랍시고 대통령선거가 언제 있었는지, 대통령 임기가 언제인지도 모르는…… 이러한 돈들을 계속해서 퍼붓고 올해도 3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능력 있는 기관에 제대로 된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50% 삭감 요구를 했더니 삭감을 안 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빅카인즈 AI 사업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250억을 쓰고 올해 또 32억을 씁니까? 이러한 문제의식들이 계속해서 팽배하고 언론재단이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도 없고 의지도 없고, 역지사지해 봅시다. 공익제보를 받았는데 내부에서 ‘색출하라. 누가 공익 제보를 했는지’ 이런 이야기나 하고 노동조합도 거기에 대해서 부화뇌동하는 이런 조직에게 이러한 엄청난 사업들을 맡겨서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언론재단에 대해서 최소한 징계성 예산 삭감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징계성 예산 삭감을 넘어서 능력도 없는 이런 언론재단에게 빅카인즈 AI 사업을 맡기는 게 정상적이겠습니까?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예산을 갖다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과시켜 주는 여야 위원님들의 아름다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징계할 때 징계해야지요. 그리고 능력 없으면 삭감해야 되지요.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는, 연간 140만 회밖에 찾지 않는 이러한 AI 사업을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양문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찌 됐든 소위에서 밤늦게까지 여야 위원님들이 서로 의견을 개진해서 만든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양문석 위원님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양문석 위원님의 말씀을 소수 의견으로 첨부해서 심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이번 문체위 예산심사소위에 국민의힘 간사로 같이 이렇게 심사를 했습니다. 다른 상임위도 열심히 했겠지만 우리 문체위 예산심사소위 여야 위원님들이 이틀에 걸쳐서, 때로는 새벽까지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또 여럿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여야 위원님들 공히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문체부가 전년도에 비해서 10% 이상 예산이 증액되었고 신규사업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사업들이 사전 준비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문체부 사업들의 예산집행률이 다른 부처에 비해서 상당히 부진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들의 그런 부진 사업에 대한 개선도 없었을뿐더러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사전 준비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앞으로 내년도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부진 사업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걱정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부족한 사업들은 철저하게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획을 좀 내실 있게 세우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문체부 예산 중에서 특히, 전체 예산은 한 10% 정도 늘었습니다마는 정책홍보 쪽 예산이 25%나 증가가 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데 국민들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내년도에 특히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늘어나는 소통 예산과 또 신규사업들이 자칫 선거에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이 유리한 쪽으로 이용한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업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실하게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감사합니다.

다음,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은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으로 현재 약 30만 명의 예술인단체 정보와 10만 건의 지원신청 정보를 관리하고 있고 19개 기관이 공동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다수 지역문화재단은 아직도 수기나 엑셀 기반 행정에 머물러 있다 보니 심의·정산 등의 공정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통한 공정 검증과 심의 과정 개선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또한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화이트리스트 의혹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공정한 심의·정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NCASS를 즉시 도입해야 됩니다. 센터는 지원 규모도 크고 파급력도 큰 만큼 오히려 NCASS 연계가 가장 시급한 기관입니다. 2021년 국민권익위도 공연예술 분야 공모·지원사업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도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결국 시스템 확대는 행정 편의 차원이 아니라 예술인의 권익을 지키고 지원사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차관님, 주요 사업부터 NCASS를 의무 적용하고 전면 도입 로드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예술인 행정 부담을 줄이고 지원사업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 부처 책무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법률에 근거한 정책성 기금입니다. 국민의 문화예술 창작을 위해 조성된 공적 자원인 만큼 그 목적에 맞게 편성·집행되어야 합니다.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수차례 지적드렸음에도 2026년도 예산안에서도 기금 구조조정이 여전히 미흡합니다. 특히 관광기금에서 넘어온 산업 진흥성 사업들이 지금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금 고갈을 자처하는 것이 누구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최근 국악방송이나 아리랑TV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취지에 부합함에도 행정적 소관만을 이유로 방발기금에서 퇴출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처부터 자체 기금을 행정편의적으로 사용하는데 어떻게 타 부처한테 부당하다고 외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차관님, 반드시 2027년도 차년도 예산편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기금의 법적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나 관련 타 기금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인 구조 정비 반드시 지금부터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민형배 위원 두 가지, 예산 관련 말씀하고 아주 간단하게 현안 관련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관련해서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에 콘텐츠 인재 양성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정부안 그대로 632억 1400만 원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콘텐츠산업에서 AI 활용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는데 현장에서 AI를 창·제작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절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더구나 이거는 과기부나 고용노동부의 AI 교육하고는 전혀 달라서 콘텐츠 특화 AI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105억 원 규모의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소수 의견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제기하신 국가유산 콘텐츠 개발보급 사업에 서라벌 천년 시간여행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90억 증액 의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이 이렇게 증액할 수 있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평가도 되지 않았고 유산청이 지난번 국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여기 저기 있어서 감사 중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90억 추가 투입하는 것은 역시 어울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수 의견으로 이 사업의 비위나 적절성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뒤에 다시 살펴야 된다, 전액砍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남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산청장님, 간단하게 제가 현안 하나 좀 여쭐게요.

종묘 개발과 관련해서 이게 나중에 결국 종묘 보존 관련 예산하고 연관이 될 것 같아서 여쭙니다.

유네스코가 122m까지 지어도 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정식으로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없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민형배 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이코모스 소속 전문가가 2006년 12월에 말을 했는데 그때 ‘건축물 높이를 건물별로 차별화해서 종묘의 하늘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했다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개인적인 의견 같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인 유네스코 의견이 없는 거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서울시가 지금 공식적인 유네스코 의견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게 맞고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민형배 위원** 오늘 지금 보니까 지난 15일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유산청에 종묘의 보존 상태 관련한 서한 전달해 온 게 있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외교 문서로 왔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리고 그거 공식적인 입장이 오늘 나옵니까, 유네스코에서?

○**국가유산청장 허민** 유네스코에서는, 지금 그 공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 유네스코 한국 대표를 통해 가지고 외교부로 전달된 외교 문서이기 때문에 오늘 파리에서 현재 시간 오후 5시경 유네스코 대표하고 유네스코하고 오늘 공식 회의를 하기로 했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형배 위원** 내용은 파악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세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내용은 외교부로부터 어느 정도 파악돼서 그 공문을, 또 내용은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게 서울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기준하고 부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지금 유네스코에서는 반드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는 강력한 지시고 권고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는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다가 그 결과를 제출하고 그걸 긍정적으로 유네스코가 검토가 끝날 때까지는 일체의 개발 승인을 중지할 것 이렇게 강력히 왔습니다.

○**민형배 위원** 오늘 오후가 되면 결론이 나겠네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오늘 오후 파리 시간으로 5시 이후에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진 위원** 질의 대신 이거 지금 하는……

○**위원장 김교홍** 질의는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

없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장님,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예, 차관님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저희 문체부에서 잘못해 가지고 저희가 수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수용한 사안이 있어서 한 가지 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광역관광 개발사업 정부안 유지에 관한 건의입니다.

지난 14일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감액 의결한 광역관광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안 유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체부는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광역관광 개발사업의 690억 감액 제기 의견에 대해 20%인 138억 원 감액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역관광 개발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임을 감안,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동 사업은 지특회계 자율계정 사업이며 감액 시 지자체의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자율계정의 경우 지자체의 재원 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예산을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정부 의사에 반해 특정 자율편성 사업 감액 시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취지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의 자율성이 존중되어 지역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문체부는 집행 부진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사업별 문제점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일단은 지금 문체부차관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의 지역자율계정 사업에 138억이 감액됐는데 이걸 원복을 할 필요성이 있다. 과거에 이걸 감액한 적도 없고요. 만약에 이게 감액이 안 되면 전체 예산의 판이 지방에서도 태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그러질 수가 있어서 오늘 예결위 하기 전에, 우리 전체회의 하기 전에 박정하 간사, 김승수 위원님 그다음에 임오경 위원님, 박수현 예결위원장, 저 이렇게 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복을 시키는 걸로 하고.

참고로 소위원회 의결 결과 중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KTV 운영 사업 중 뉴미디어 정책홍보 채널 운영 사업에 대해서 10억 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것도 합의를 해서 이 증액을 반영하지 않고 정부 원안으로 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거는 소관 의결 자료 7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관광산업 용자 지원에 6471억 중의 30억을 감액했고 정책 홍보 및 분석 지원에 홍보 전문교육 예산 4억 원도 따라서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여야 간에 간사님들하고 다 합의를 한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없으니까 김승수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양문석 위원님, 민형배 위원님 의견은 소수 의견을 첨부하여 심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자료제출 요구를……

○위원장 김교홍 박정하 위원.

○박정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좀 전에 민형배 위원님하고 유산청장님하고 질의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세계유산센터 명의로 온 공문이, 외교 문서라고 표현하신 게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외교 문서라 비공개라고, 제가 사전에 질의를 드렸더니 이거 역시 비공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서울시에 이미 공문을 보냈거든요, 좀 전에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내용은 개발사업 승인을 중단하라 이런 강력한 얘기라 저희가 좀 살펴보고…… 이게 국가간의 문서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세계유산센터로부터 온 외교 문서라고 한 답신을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이 부탁을, 말씀을 좀 주시고 원문과 번역본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교홍 국가유산청장님, 서울시에 공문이 갔으면 위원님들에게도 그걸 전달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서울시는 저희들이……

○위원장 김교홍 아니,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내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렇게 보내 드리세요, 똑같이. 보내 드리면 되지요.

임오경 간사님.

○임오경 위원 언론진흥재단 김효재 이사장님에게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법인회계로 해서 지역방송에 내년도 2026년도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150억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임오경 위원 문체부 승인은 받으셨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문체부와 상의한 내용입니다.

○임오경 위원 상의한 내용이다? 아직 승인은 받지 못했고요? 결정된 사안은 아니네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올해 150억이라는 숫자를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지역방송 관련돼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건 국회에서 허락을 해 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임오경 위원 문체부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문체부가 승인을 할 시와 못할 시에는 그만한 분명히 타당성……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가, 수락을 하기 위해서 김효재 이사장님이 발언을 하신 거에 있어서 충분한 설득이 있으셨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래서 150억이라는 숫자, 올해 발언하신 거에 있어서 반드시 2026년도 예산 어떻게 반영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헌법 제57조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증액되거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한 정부 측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교홍 다음은 국가유산청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동의하고요. 조금 전에 외교 문서에 대해서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교홍 아니, 나중에 하세요. 동의하시고 나서 의결한다는데……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사항에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기타 정책 의견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 청장님 하실 말씀 하세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죄송하게도 외교부에 온 문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저희들이 그 원본이나 사본을 첨부한 게 아니고요. 그냥 저희들이 이렇게 왔다는 것을, 조치를 알림 정도로 해서 서울시에는 해서 그 의견을 한 달 내에 받으려고 하고요. 조금 죄송하지만 이것은 외교부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올리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교홍 예?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 원본을 공개해 달라는 건하고 외교 문서는 외교부와 상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예, 그렇게 하세요.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교홍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앞서 박정하 간사께서도 지적하셨지만서도 국가유산청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받은 서안이라고 그러면서 자료를 달랑 한 장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서울시의 사업 중단을 이야기하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것을 아무런 설명 없이 또 자료 없이, 증거 없이 요구한다는 것은 이건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박정하 간사께서 요구하셨듯이 여기에 첨부된,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하게 된 후속 서류는 물론이거니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 이런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논의 과정, 누가 어떤 논의를 거쳐서 또 어떤 공식적인 서류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래서 아까 허민 청장 얘기가 외교부하고 상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 보낸 것은 그 문서의 요약본이잖아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위원장 김교홍 이것 외교부하고 상의해서 박정하 간사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주면 되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다음은 예결위 동의 요청과 관련한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안이나 기금운용계획안의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국회법 제84조와 제84조의2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교부의 동의 요청 시한 내에 위원회를 다시 개회하여 동의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해 추후 예결위의 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여야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1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존경하는 김교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사업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신 박수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K-컬처의 세계적인 확산을 뒷받침하고 문화와 예술의 창작 기반을 두텁게 하며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와 관광 그리고 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소중한 재원이 될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들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결하여 주신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관심과 응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민 국가유산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존경하는 김교홍 문화체육관광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박수현 소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국가유산청은 K-컬처의 뿌리인 국가유산을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K-헤리티지의 가치 확산과 문화강국 실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고견을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반영하고 의결하여 주신 예산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법률안 등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최형두 의원·박수현 의원·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8)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5)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9)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9)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31)
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7)
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1)
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6)
1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1)
1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0)
13.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95)
1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1)
15.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2)
16.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6)
1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2)
1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91)
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9)
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3)
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9)
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9)
2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8)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2)
25.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1)

호 2212039)

2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5)
2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5)
2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3)
2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5)
30.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7)
3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0)
3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7)
33.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4)
3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322)
3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0)
3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10)
3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7)
3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26)
3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2)
4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2)
4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7)
4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7)
4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67)
4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2)
4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6)
4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92)
4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3)
4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0)
4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1)
5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2)
51.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9)
5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7)
5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66)
54.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6)
5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5)
5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1)
5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36)

5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95)

59.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3)

(14시35분)

○**위원장 김교홍**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9항까지 총 5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이는 위원님들의 노트북 단말기에 있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천우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33항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소관 31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54항부터 제59항까지 국가유산청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및 국가유산청 소관 총 37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최형두 의원, 박수현 의원, 이해민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2027 제41차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은 최대 100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세계 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재정 지원체계 구축, 정부지원위원회의 설치, 출입국·보건안전 지원 등 대회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난·안전관리, 감염병 대응, 여름철 폭염 등을 고려하여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며 국제적·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된다는 점에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특정 종교 행사에 대한 국가 지원이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불교계의 반대의견이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행사별 개별 특별법이 아닌 국제행사 전반을 포괄하는 일반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 3건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박상혁 의원안은 공연 입장권 판매 시 일정 비율을 디지털취약계층에게 현장판매·전화예매 등의 방식으로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공연 시장에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 부과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인지 불분명하여 법 적용에 혼란이 예상되고 장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일정 비율을 규정하게 되어 경제적 차립도가 낮은 기초공연예술 단체 등에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

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을 심사 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종오 의원안은 방화막의 기준을 한국산업표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을 프로세니엄 형태의 300석 이상 공연장으로 확대하며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이 자율적으로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공연장의 안전 기준을 실질적인 위험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중·소규모 공연장의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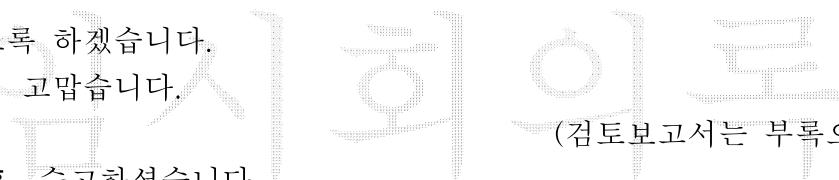
5쪽입니다.

다만 방화막에 KS 규격을 명시할 경우 천재질 방화막이 배제되어 강재질의 방화막을 제작하는 특정 업체만을 협용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건축구조상 방화막 설치 시 건축 구조물 및 프레임 하중 등으로 화재 발생 시 대피로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방화막이 오히려 무대작업자와 공연자의 위험도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을 심사 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선교 의원안은 입장권 등 부정판매 금지행위를 온·오프라인으로 확대하고 포상금 제도, 별칙 상향 및 몰수·추징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입장권의 부정판매를 근절하여 건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4항부터 53항까지 문화체육관광부2차관 소관 20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2차관 소관 총 20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4항 정부가 제출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국납부금의 환급청구권을 신설하고 소멸시효 및 기금 귀속 근거 등을 마련하며 환급청구권 통지 의무 및 환급 관련 업무의 위탁 등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환급청구 절차 관련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고 환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확보 근거 마련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다섯 건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김미애 의원안은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모두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사업 시행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발급 대상 지역 또한 사업의 취지에 맞게 명확히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

다.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박수현 의원안은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및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보조금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컨설팅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효율적·종합적인 관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김재원 의원안은 장애인 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의 양성 및 자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수어활용 능력에 대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을 이수한 체육지도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육활동 차별 금지 의무를 구체화시킨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청각장애인 아니라 시각장애인 등 타 장애 유형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고 수어 활용 능력에 대한 자격검정을 이수한 체육지도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시책이 체육지도자 취득 부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한 법률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 잠깐……

○위원장 김교홍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오늘 법안 내용 중에 1차관 소관 법안에 존경하는 임오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비법 중에 홀드백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홀드백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 영화산업이 굉장히 침체돼 있고 극장이 극장 관객 수 감소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화 생태계 내 여러 단체나 사업체나 이런 데 따라서 이해관계가 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영화의 성격에 따라서 홀드백의 기간이 조정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홀드백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걸 법안에 넣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그런 의견이 많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언론과 관련된 법들이 여러 개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을 보면 아웃링크를 의무화하고 또 내부 기준에 해당되는 기사에 대해서는 제공 또는 매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아웃링크를 할 경우에 오히려 중소신문이라든지 지역신문들은 더, 어떻게 보면 독자들에게 기사를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아웃링크를 하기 위한 기술적인 비용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포털에 대해서 제공 또는 매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기

준 자체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에 언론에 대한 통제로도 이게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양문석 의원님께서도 보면 정부광고법을 발의하셨습니다. 정부광고에 있어서도 언론사 간의 여러 가지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언론 광고가 분배, 배분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정부 모멘텀 선정 과정에서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자의적으로 적용될 경우에 오히려 언론에 대한 통제로 악용될 여지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만 문체부 의견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미 여러 가지 언론사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광고까지 추가적으로 처벌됐을 경우에 이중 처벌 이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교홍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9항까지……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법률 질의인 줄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예?

○배현진 위원 법률안 질의인 줄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법률안 질의인데요, 대체토론.

○배현진 위원 현안질의 지금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교홍 현안질의는 아니고 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9항까지 57건의 법률안은 각각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법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배현진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질의를 하려 하는데 지금 법안 질의라고 하셔 가지고……

○위원장 김교홍 법안 질의하는 건데요.

○배현진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대체토론이에요, 대체토론. 법안에 관련된 대체토론.

○배현진 위원 저 질의, 대체토론으로……

○위원장 김교홍 왜 아까 할 때는……

○박정하 위원 제가 실수로 제 질의를 했었거든요. 기회 한번 주세요.

○위원장 김교홍 그래요? 예.

○배현진 위원 오늘 헛갈리네요.

감사합니다.

유산청장님, 오늘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배현진 위원 제가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말씀을 좀 여쭈려고, 유네스코에서 영향평가를 받으라고 공문을 보내 왔어요, 외교부를 통해서. 그래서 그때까지 서울시의 모든 개발을 중지하라, 사업의 승인을 중단하라 이런 내용으로 공문을 받았다고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그랬습니다.

○배현진 위원 우리나라에 주유네스코 대사가 있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배현진 위원 외교부 거기 통해서 받으신 거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배현진 위원 정부에 먼저 유산청의 입장을 전달한 것을……

○국가유산청장 허민 아닙니다.

○배현진 위원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아니, 그러니까 저는 편지를 받은 겁니다.

○배현진 위원 그러면 말씀 안 하셨는데 유네스코 대사가 알아서 해 가지고 유네스코에서 받아서 이렇게 입장 외교부를 통해서 한 겁니까, 유산청으로?

○국가유산청장 허민 뭐냐 하면 제3자, 그러니까 제3자가 유네스코 세유센터에다가 민원을 제기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배현진 위원 아무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유네스코가 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하는 게 지금 행정부, 말하자면 행정기관이나 광역단체나 이런 데 법률적인 구속력이 1도 없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아니, 우리가 세계적인 지구가 있고……

○배현진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률적인 권한이 없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세계유산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현진 위원 세계유산 평가에 대한 것은 강력한 권고일 뿐이고 지금 사업 승인을 중단하라는 법률적인 권고는 없습니다.

제가 이것 지금 왜 말씀드리냐 하면 시민들이 헛갈리실까 봐 그래요. 유네스코가 우리나라 기관들이나 광역단체들에 대해서 사업하지 마라고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유산청에서 지난해에 세계유산법상의, 세계유산지구가 세계유산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내서 통과시키고 시행을 하기 시작했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세계유산법, 예.

○배현진 위원 청장님의 이 말씀을 계속하시는는데, 제가 이 점에 관해서도 좀 연구를 해봤어요.

(영상자료를 보면)

그런데 국토부에서 당시 굉장히 첨예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100m 밖의 그지역까지 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규제하는 것은 이중 규제이다. 그리고 재개발 공급이 필요한 도심지역에는 대단히 불필요한 조치라고 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바람에 개정안의 기본안만

지금 겨우 통과하고 세부 수칙을 하나도 통과를 못 시켰어요, 유산청에서.

○**국가유산청장 허민** 계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걱정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만약에 서울시와 유산청이 또다시 법률적으로 붙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또 집니다. 그럴 가능성이 놓후하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저희들은 세계유산지구 11군데를 하면서.....

○**배현진 위원** 그리고요 청장님께서 유네스코에서 공문을 받으셨다니까요 제가 직접 유네스코 관계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사진 좀 먼저 띄워 주세요. 오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도자료입니다.

1분만 더.....

○**위원장 김교홍** 1분을 더 못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현안질의 시간이 아닙니다. 법안에 대한 대체질의니까.....

○**배현진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마무리하여 주세요.

○**배현진 위원** 시민단체가 제공했던 사진과 유산청이 제공한 사진.....

1분 넣어 주세요.

○**위원장 김교홍** 아니 아니, 그냥 하세요.

○**배현진 위원** 그냥 하면 됩니까?

제공한 사진을 보세요, 청장님. 보시면 똑같지요. 지금 카메라 각의 소실점 위치가 똑같지요? 이것 제가 이렇게 하지 말고 종묘 정전의 방향에서 제대로 유산청에서 연구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하라고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시민들을 햇갈리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정치 선동이에요. 문화유산청에서 그것 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유네스코 관계자한테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박탈될 가능성은 있느냐? 종묘가 지금 세운상자를 개발하면 박탈될 가능성은 있느냐? 거기서 이렇게 응답했어요. 등재 취소 사례가 세 가지,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 교량 건설로 인한 취소, 영국 리버풀 부두에 관한 재개발로 인한 취소, 오만 아라비아오릭스 보호구역에 대한 유네스코 취소 이 세 가지가 지금 유네스코가 등재 취소를 한 경우인데 이것은 100m 내, 세계유산 영향평가 구역 내에서 개발 행위를 했고 더군다나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투표를 해서 교량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유네스코 박탈해 달라고 해 가지고 투표를 하고 발표한 모든 세 가지 사례가 다 있습니다. 우리랑 다르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나라마다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현진 위원** 나라마다 상황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요.....

○**위원장 김교홍**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배현진 위원** 예.

유네스코조차도 지금 박탈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응답을 했는데 지금 청장님

께서 저희에게 공문 이 내용도 원문을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요약된 내용으로 해서 서울시민들한테 마치 지금 세운상가 개발하면 유네스코 박탈될 것 같다고 위기감을 조장하는데 또 기자회견을 해서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오늘 서울시와 함께 관계단체협의체 만들었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그렇게 하기로 제가 제안했습니다.

○**배현진 위원** 기자회견이나 정치 선동이 아니라 관계단체협의체에서 하십시오. 서울시가 지금 유산청이 이렇게 나가면 그냥 서울시 마음대로 하겠다, 왜?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진짜 저희가 만에 1%라도 걱정하는 사안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책임지실 수 있어요? 자극하지 마시고 관계기관단체에서 협의해서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청장님, 매 건건 기자회견하지 말고 지켜보시면서 저희한테 정확한 내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옳은 말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나온 사항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들은 세계유산 지위를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위원장 김교홍** 청장님, 여하간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지위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요 우리 국가유산에 대해서는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협의는 원만하게 잘 조정을 해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배현진 위원** 서울시 자극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김교홍**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수 1차관, 허민 청장 등 소관부처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문체부2차관까지.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여러분, 속기, 경위 및 국회방송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김교홍 김승수 김재원 민형배 박수현 박정하 배현진 손솔 양문석 임오경
정연숙 조계원 조은희 진종오

○**출장 위원(1인)**

이기현

○**첨가 위원(1인)**

김윤덕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 김용규

입법심의관 김충섭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

제2차관 김대현

기획조정실장 김정훈

문화예술정책실장 이정우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김재현

종무실장 김도형

국민소통실장 공형식

정책기획관 이정은

문화정책관 이정미

예술정책관 이용신

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해외홍보정책관 채수희

소통정책관직무대리 이영호

소통지원관 정태경

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콘텐츠정책국장 최성희

저작권국장 정향미

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체육국장 이선영

관광정책국장직무대리 박미경

체육협력관직무대리 이혜림

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한상준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효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하형주

국가유산청

청장 허민

차장 최보근

기획조정관 황권순

유산정책국장 이은복

자연유산국장 김동대

문화유산국장 이종희

무형유산국장 윤순호
역사유적정책관 이종훈

【보고사항】

○의안 회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0.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8)

11월 11일 회부됨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4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7)

이상 3건 11월 13일 회부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8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1)

이상 6건 11월 17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1. 11.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3)

11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1. 14.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6)

11월 1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